

801

가	제	건축과	기획번호	근거서류집수일자
나	제	오금석	구내 482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국장부	제 2
사무장	제 1	사무장	제 102	제 119
경리	제 1	사무장	제 102	제 119
1902. 12. 14.	1902. 12. 14.	1902. 12. 14.	1902. 12. 14.	1902. 12. 14.
부	부	부	부	부
기	기	기	기	기
수	수	수	수	수
참	참	참	참	참

제 목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경고문 인허구

1. 1906. 5. 17- 02. 5. 25 까지 최고회의 일반 국정  
감사 실시를 하였을지 당국의 지적 사항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을 지  
적 하였으므로 당시에서는 국민의 위법 정신과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 하  
기 위하여 서도계 6143 ( 1902. 10. 6 )로 내무장관 . 재무장관 . 법무부  
장관 . 건설부 장관등의 연명으로 별지와 같이 경고문을 작성하여 경고하여  
주 것을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 하였으나 일시 보류키로 되었다는 회시가  
있었음.

2. 당시에서는 1901년 6월말 협제로 시내에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 하였는데 약 58000 여동이었던 것이 각종 공사 구간  
보안상 . 방화 위험지구 및 도시 미관상 위 해로운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  
철거하여 정릉동 . 삼양동 . 용은동 . 남가좌동 . 구도동등에 입주 시켜 왔

122

288

506

서울특별시 6-1 13

12 19

으나 아직 까지도 약 47,000 동이 ( 11 월말 현재 ) 잔존하고 있어  
 1963 년 에도 계속 철거를 단행함 방침이나 아직 까지도 물지각한  
 일부 시민들은 철거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묘한 수단으로 당국의  
 눈을 피하여 도처에서 무허가로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민의  
 준법 정신을 앙양케 하고각성을 촉구 시켜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  
 물이 증가 되지 않도록 벌안과 같이 경고문을 인쇄하여 공고모져 하  
 오니 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공보실장	발신	도시계획국장
제목	보도자료 제출		

1. 시내 도처에서 당국의 철거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  
 묘한 수단으로 무허가건축 및 위법 건축을 하고 있는 지각 없는 시민  
 들에게 준법 정신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벌첩과 같이 경고문을  
 공고 한바 있으니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경고문 1 부 끝.

수신	배부처참조	발신	시장명에 의하여 총무과장 양무용
제목	경고문 배부		

벌첩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건축 단속에 대한 경고문을

서울특별시

505

140 6-2

임 석 아 어 배 부 하 니 각 동 에 계 시 공 고 하 어 계 속 철 저 한 단 속 에 유 무  
없 도 루 하 기 바 람 .

유 점 . 경 고 문 . 부 . 곱 .

배 부 처 서 정 1 - 9 . 서 국 11

품명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경고문 인쇄

규격 보조 802 ( 2 절 )

소요 금액 *별봉리 같은*

지출 비목. 토독비. 사무비. 수송비. 인쇄비.

서울특별시 공고제 51 호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경고문 공고

5. 16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총력을 <sup>(傾注)</sup> 경주하고 있음은 참으로 <sup>(慶幸)</sup>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일부 지각없는 본들은 당국의 눈을 피하여 교묘한 수단으로 시내 도처에서 무허가 및 위법 건축을 감행하고 있음은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이는 혁명 과업 수행에 <sup>(逆反)</sup> <sup>(阻害)</sup> 역행되는 처사로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300 만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부정과 구악을 일소하여야 함 이 마당에 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sup>(罪惡)</sup> <sup>(惡事)</sup> 처사임으로 자체에 이를 받은 <sup>(受)</sup> <sup>(本)</sup> <sup>(罰)</sup> 신(拔本削枝) ) 하고 준법 정신을 <sup>(昂現)</sup> 앙양함으로써 만이 명량한 수도 서울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 도처에 <sup>(到處)</sup> 전립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물론 위법 건축물에 이르기 까지 당시의 방침에 따라 <sup>(逐次)</sup> 점차적으로 철거 또는 제각을 단행 할것임바 철거 단행에 병행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중에도 위법 공사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도록 할것이며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sup>(撤去)</sup>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서울특별시

502

16-5

철거 및 제각을 단행할것을 경고 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무리가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의 수도 서울의 제반 국토 건설 사업이 <sup>(에 있어서)</sup> <sup>(延期)</sup> 연기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명심하여 <sup>(舒心)</sup> 앞으로는 당국의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sup>(遵從)</sup> 양잠하시고 수도 서울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  
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1962. 12. 24.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

6-6.

293

18

501